

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. 10. 26 선고 2021가단105814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정

담당변호사 이용호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2. 10. 12.

판 결 선 고 2022. 10. 26.

주 문

1. 피고와 C 사이의 별지 '부동산 목록'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각 3/7 지분에 대한 2021. 8. 5.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.
2. 피고는 C에게 제1항 기재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. 8. 13. 접수 제122882호로 마친 각 소유권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- 원고는 C을 상대로 원단 대금 약 6,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21. 3. 18.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고,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(의정부지방법원 2020가단103382 판결, 이하 ‘종전 소송’ 또는 ‘종전 판결’).
- C은 2021. 8. 5.경 주문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각 3/7 지분(이하 ‘이 사건 각 지분’)을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하고, 주문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. 당시 C에게는 위 각 부동산 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1 내지 6호증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주장 및 판단

가. 원고의 주장

원고에 대하여 원단대금채무를 부담하는 C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원고 등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, 취소되어야 하고, 원상회복으로 증여에 따른 지분이전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.

나. 피고의 주장

(1) C은 원고로부터 원단을 공급받은 적이 없다. 원단 관련 사업을 한 적조차 없다(C의 아들인 B이 원고와 거래한 것으로 추측된다). C은 종전 소송에 관하여도 아는 바가 없다. 소장을 받은 적도 없다(B이 소송을 수행한 것으로 추측된다). 결국 C은 위 증여 당시 원고의 존재나 원고의 채권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, 사해의사가 없었다.

(2) 피고는 아버지인 C로부터 이 사건 각 지분을 줄 테니,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병원비나 요양비를 부담하여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을 뿐이고, C의 채무관계나 사해의사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, 선의의 수익자이다.

다. 판단

(1)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C에 대하여 약 6,000만 원의 확정판결채권을 가지고, 이는 위 증여 이전에 성립하여 있었으므로,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된다. 또한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¹⁾를 종합하면 C이 2020. 4. 5.경 종전 소송의 소장 부분을 직접 수령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. 따라서 C이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거나 종전 소송 자체를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(2) C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지분을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므로, 이는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고,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종전 소송에도 관여하였거나, 적어도 소송이 있다는 사실은 알았다고 보이므로, 사해의사도 인정할 수 있다.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(3)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인지에 관하여 보건대, C과 피고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, 을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.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(4) 따라서 C이 이 사건 각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,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각 지분에 대한 소유권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 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.

판사 예혁준

[별지]

부동산 목록

1.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

대 152㎡

2.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

위 지상

연화조 경스라브지붕 주택 및 부속사

지중 83.83㎡ 부속사

1층 83.83㎡ 주택

1) 코트넷 사건검색결과 등